



제326회 임시회  
2014. 1. 2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14년 1월 9일

3. 제안이유

- 제안 활성화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와 소통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제안의 실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4. 주요내용

- 제안의 종류를 재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3조)
  - 제안을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출하는 아이디어 제안,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공모제안, 아이디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실시제안으로 구분
  - 공모제안 채택·심사기간을 공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실시제안의 제출 기한은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함
-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무규정 마련(안 제4조)
- 주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제안심사 과정 주민평가제 도입(안 제9조)
  - 위원회 심사시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토록 함
-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실시성과 제고방안 마련(안 제12조, 제17조, 제25조)
  - 실시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도입하고 제안자가 실시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제안실시 우수공무원 및 제안참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2008년 5월 9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시행 전에는 충청북도 제안규칙에 의거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음
-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안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제안 접수 건수가 공무원 제안의 경우 24건~5,574건, 도민제안의 경우 20건~618건으로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연간 접수 건수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 평균 제안 채택건수는 공무원 제안 7.2건, 도민제안 2.5건으로 제안 접수건수와는 큰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및 제안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실정임  
<참고자료 1 ‘제안채택 및 창안등급 부여 현황’ 참조>
-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2010년 개정)과 공무원제안 규정(2011년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용하여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나.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 공무원제안과 주민제안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현재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제안 제출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으로 단순화하고, 실시 제안을 신설하여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제안의 처리기간과 실시제안의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제안 심사 과정에 주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포상대상자를 제안 제출자에 한정하지 않고 우수부서와 제안을 실제 업무에 시행한 우수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조직 내에서의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조례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모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안의 채택 여부를 업무 소관 부서의 판단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주민평가 방식,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향후 규칙 개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구체적인 제안서 제출형식을 마련하여 제안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제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 종류별로 제안서 형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1. 제안 채택 및 창안등급 부여 현황
2. 제안심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현황

# 제안 채택 및 창안등급 부여 현황(2002~2013년)

## □ 공무원제안

연도별	접 수	채 택	창안등급 부여 현황						비고
			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상	
계	12,947	161	86	-	1	6	25	54	
2002	54	4	4	-	-	1	2	1	
2003	73	6	6	-	-	-	3	3	
2004	66	2	2	-	-	-	-	2	
2005	39	7	7	-	-	-	-	7	
2006	42	3	3	-	-	-	-	3	
2007	46	3	3	-	1	-	1	1	
2008	24	-	0	-	-	-	-	-	
2009	5,574	20	20	-	-	1	4	15	
2010	4,470	7	7	-	-	-	3	4	
2011	1,520	15	15	-	-	-	6	9	
2012	942	83	8	-	-	1	-	7	
2013	97	11	11	-	-	3	6	2	

## □ 주민 제안

연도별	접 수	채 택	창안등급 부여 현황						비고
			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상	
계	2,237	43	30	-	-	-	7	23	
2002	72	5	5	-	-	-	-	5	
2003	76	4	4	-	-	-	1	3	
2004	76	-	0	-	-	-	-	-	
2005	64	1	1	-	-	-	-	1	
2006	52	3	3	-	-	-	-	3	
2007	37	3	3	-	-	-	1	2	
2008	20	1	1	-	-	-	-	1	
2009	64	3	3	-	-	-	1	2	
2010	531	-	0	-	-	-	-	-	
2011	243	-	0	-	-	-	-	-	
2012	384	7	3			1		2	
2013	618	16	9			1	4	4	

# 제안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 운영개요

## □ 제안심사위원회

- 근거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3조(전문위원)
-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구 분	위 원	비 고
위 원 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	보건복지국장	
"	경제통상국장	
"	농 정 국 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	균형건설국장	
"	바이오환경국장	
"	소 방 본 부 장	
"	정 책 기 획 관	
"	공 보 관	

## □ 전문위원

- 근거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3조(전문위원)
- 구성 : 제안의 심사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7명
- 임기 : 2013. 12. ~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

소 속	직 위	위 원	비 고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 수	이동수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진재구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 수	남기현	
충북NGO 센터	센터장	송재봉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삼철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기획경영부장	김중수	
(재)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 2013년 위원회 2회 운영

- 함께하는 충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8월)
- 2013년 제안 및 충북3.0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12월)